

2026년 산학협력 마케팅 콘텐츠 지원사업 모집 공고

용인시산업진흥원과 명지대학교 디자인학부의 협력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자인 제작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7월 9일
용인시산업진흥원장

1 사업개요

- **사업목적:**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맞춤형 콘텐츠 디자인 지원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 및 상품성을 강화하고자 함
- **지원기간:** 2026. 9. ~ 2026. 12.
- **지원규모:** 20개사 내외
- **지원방법:** 명지대학교 디자인학부 연계를 통한 맞춤 디자인 지원(간접지원)
 - 기업-학생(팀)을 매칭하여 프로젝트 형식의 맞춤형 디자인 지원
- **지원내용:** 기업 수요에 기반한 콘텐츠 맞춤 디자인 제작 지원
 - 신청기업은 희망 지원분야에 대한 1·2순위를 제출하여야 하며, 희망 지원분야에 대한 학생(팀) 매칭을 통해 최종 선정 시 신청한 분야 중 1개 분야를 지원받을 수 있음

구분	지원분야	지원 내용	관련 매칭 전공
1	브랜드·홍보물 디자인	- CI/BI, 패키지 디자인 (디지털 목업) - 홍보물·인쇄물 디자인 (디지털 목업)	비주얼커뮤니케이션 디자인
2	제품 디자인	- 제품 컨셉 디자인 - 3D모델링·렌더링	인더스트리얼 디자인
3	홍보 영상	- 기업홍보 및 제품 소개 영상 제작 - SNS 숏폼 콘텐츠 제작	영상애니메이션 디자인
4	패션 디자인 및 바이럴마케팅	- 유니폼·작업복 디자인, 의류 제품 디자인 - SNS 바이럴 마케팅	패션 디자인

2 신청자격

- **지원대상:**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*

***중소기업 범위 (별첨2)**
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

□ 제외대상

-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
- 부도 또는 휴·폐업 중인 기업
-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- 기타 관련규정,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

3 신청기간 및 방법

- **신청기간:** 2026. 7. 9.(목) ~ 7. 27.(월) 17:00 까지

※ 접속이 물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,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

- **신청방법:** 온라인 접수 (<https://ybs.ypa.or.kr>)

-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지원사업 신청
 - ※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
 - ※ 접수처 외 메일,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
- 접수방법 : 용인기업지원시스템(ybs.ypa.or.kr)에서 회원가입 → 기업지원(상단메뉴) → 지원사업공고 → **2026년 산학협력 마케팅 콘텐츠 지원** → 신청서 작성
- 안내된 신청서류(첨부파일)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기업지원시스템 내 업로드 제출(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)
 - ※ **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 요청할 수 있음(서류 미비시 선정 제외)**
 - ※ **직인 날인한 신청서 원본 파일은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**

- **문의처:** 판로지원팀 / 031-323-4690 / hyseok@ypa.or.kr

4 선정방법 및 추진일정

□ 선정방법

- 서류검토: 신청자격 및 필수 제출서류 등 적격 여부 검토
- 선정평가: 명지대학교 디자인학부 내부 평가를 통해 선정
 - 평가기준: 지원필요성, 디자인 개발/활용 가능성, 과제적합성, 기대효과
- ※ 명지대의 협의를 통해 진흥원 유사 지원사업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을 우선 선정함

□ 추진절차 및 일정

신청서 접수	기업선정	업무협약	디자인 지원
모집기간 (7. 9. ~ 7. 27.)	- 서류 검토 - 선정평가	지원사업 관련 업무협약 체결	- 기업-학생(팀) 매칭 - 디자인 지원
7월	8월	8월	9월~12월
진흥원	진흥원, 명지대	명지대 ↔ 지원기업	명지대 ↔ 지원기업

※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5 제출서류

구분	구비서류	부수	비고(PDF 형식으로 제출)	발 급 처
1	신청서 및 제품설명서	1부	- 제공서식 활용	진흥원 양식
2	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	각 1부	- 제공서식 활용 (대표자 및 사업담당자 서명 후 제출)	
3	확약서	1부	- 제공서식 활용(대표자 서명/날인 필요)	
4	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	1부	- 사본으로 제출 - 사업자등록증명은 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분으로 제출	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
5	지방세 · 국세 납입증명서	각 1부	-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	국세청 홈택스 및 정부24

※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필요

6 유의사항

- 신청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신청서는 선정 제외
-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
-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방문할 수 있으며,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
-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,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
-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및 명지대학교 지침·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

- 별첨 1. 마케팅 콘텐츠 지원 예시
2. 중소기업 범위 (중소기업기본법)

별첨1 지원분야별 지원 예시

CI/BI, 브랜드·홍보물 디자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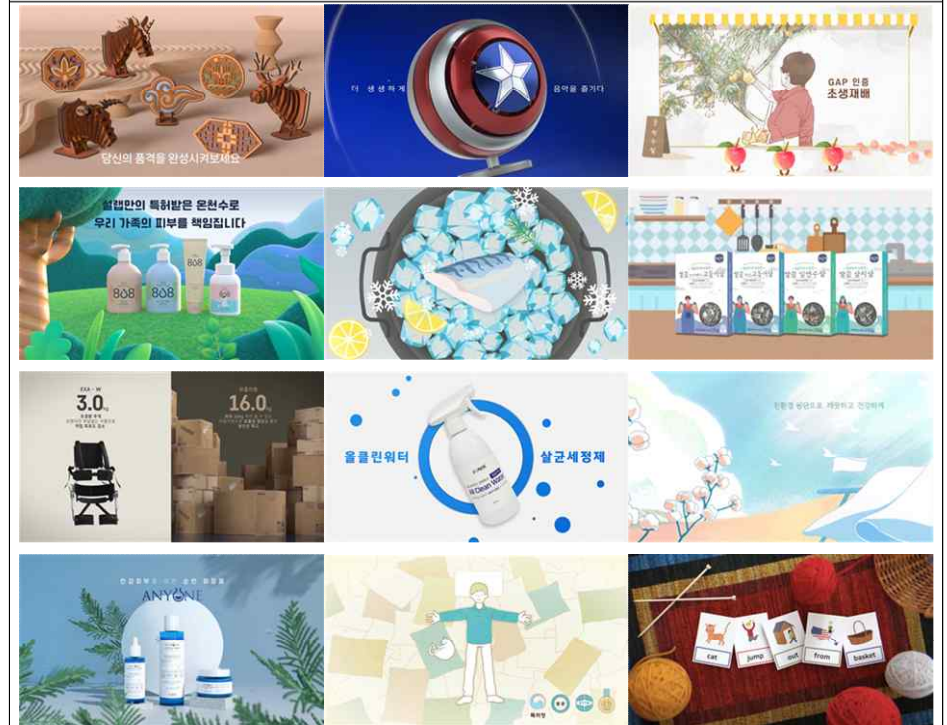
제품디자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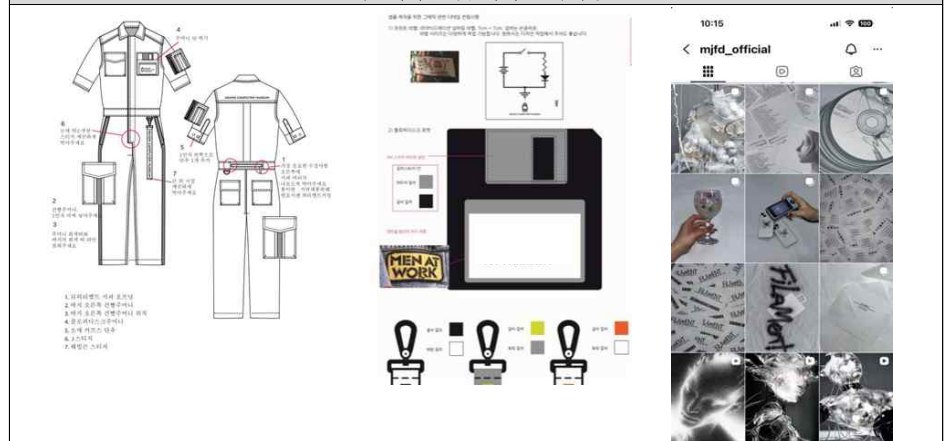
컨셉디자인

모델링·렌더링

홍보영상



패션디자인 및 바이럴 마케팅



※ 상단의 예시는 창작물로써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.

중소기업기본법

[시행 2024. 8. 28.] [법률 제19992호, 2024. 2. 27., 일부개정]

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(이하 “중소기업시책”이라 한다)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(이하 “중소기업”이라 한다)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·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

- 가.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- 나.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
2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

3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, 이종(異種)협동조합연합회(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4.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, 연합회,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5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(小企業)과 중기업(中企業)으로 구분한다.

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. 다만,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4. 2. 20.>

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·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0. 20.>